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해 나열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인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 정의하고,
-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 간 공동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관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으로 확대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지역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오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고,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611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1월 17일

발의의원 : 김영희, 장인수, 김명철,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해 나열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인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 정의하고,
-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 간 공동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관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으로 확대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지역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오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고,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업체를”을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4.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p> <p>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p> <p><신 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p> <p>2. ----- ----- ----- ----- -----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p> <p>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2. 하도급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
3.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4.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